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62호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차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제8차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의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9조제1항, 제81조에 따라 아래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1.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기 존 내 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하이리움산업(주)	김서영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204호
	2	(주)다다코리아강릉지점	손남기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305
	3	(주)미래기준연구소	채충근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층 308호
	4	현대로템(주)	이용배	경남 창원 의창 창원대로 488
	5	(주)크라이온	김재형	강원 삼척 언장1길, 1층 5호
	6	디엘(주)	임근영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층 7호
	7	(주)진아스틸	김두일	강원 동해공단8로 42
	8	(재)강원테크노파크	김성인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40
	9	(주)제아이엔지	박인규	강원 삼척 언장1길 27, 창업보육센터 307호
	10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11	정경테크	배남열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06-31
	12	효성중공업(주)	김동우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강원 강릉 과학단지로 137-41
	14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강원 삼척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연구관 708호
	15	(주)보고	전애영	강원 삼척 근덕 본동길 21-196
	16	(주)빈센	이철환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7호
	17	컨텍모빌리티(주)	윤석재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8	(주)아이팍	김동현	강원 삼척 언장1길 27, 302호
	19	정우이앤이 주식회사	이선해	강원 삼척 언장1길 27
	20	성우인스트루먼트(주)	서원식	강원 삼척 언장1길 27, 113호
	21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김병식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그린에너지관 6층 610호
	22	린데코리아 주식회사	성백석	강원 삼척 언장1길, 삼척창업보육센터 305호
○ 단,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밖의 사업자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라 해당 특구로 사업장 소재지의 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완료 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 인정함				
변경				

사 항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추가	10	(주)수립테크	김은진	경기 안성시 미양면 강덕1길 44	액화수소 생산설비 (배관, 밸브)실증 수행 및 실증데이터 확보
	사업자 해지	10	넬코리아(주)	마틴	서울 강남 테헤란로 84길 15	특구 내 이전 불가
비 고	관보 제19803호(2020.07.28.) 194쪽 관보 제19812호(2020.08.10.) 24쪽 관보 제19886호(2020.11.27.) 150쪽 관보 제19954호(2021.03.09.) 85~86쪽 관보 제20014호(2021.06.03.) 113쪽 관보 제20040호(2021.07.09.) 10~11쪽					

2.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기 존 내 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제품의상용화	< 기존내용과 동일 >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④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⑤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 수소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3	액화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 기존내용과 동일 >
변 경 사 항	○ 변경사항 :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사업 부대조건 변경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2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④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자동차 연료공급용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허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세기준 KGS FP217 저장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특례 (기준 적용의 특례) ⑤ 이동형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실증특례 부여 ○ 액화수소 연료전지 선박, 드론 운행 실증을 위해 이동형 기체/액화 수소 충전소 충전대상에 선박, 드론 포함 허용

		<부대조건> ○ 안전조건 - (실증구간) 주거민이 없는 구 대관령휴게소, 대진항 선착장, (주)보고 부지(삼척 근덕 본동길 21-196)을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상용화 실증 수행 *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 장소마다 허가 및 검사할 것
비고	관보 제19803호(2020. 7. 28.) 195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1. 실증특례 연장

가.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

○ 특구사업자

기 존 내 용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	한영테크노캠(주)	최경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308호(두왕동)
	2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허석봉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3	(주)원일티엔아이	이정빈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7층 706호(교동, 울산그린카기술센터)
	4	(주)가온셀 울산지사	장성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5	비나텍(주)	성도경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두왕동)
	6	(주)코렌스알티엑스	조형근 천세욱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7	(주)코멤텍 울산지점	김성철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8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안홍상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25
	9	(주)스마트오션	박재용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16, 7층 704호(두왕동,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10	(주)하나티피에스	구형준	울산 울주군 활천산업1길 145
	11	(주)유니팩	이영호 김명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36
	12	에스아이에스(주)	신인승	울산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산168-3번지
	13	(재)울산테크노파크	권수용	울산 중구 종가로 15

	<table><tr><td>No</td><td>특구사업자명</td><td>대표자명</td><td>주소</td></tr><tr><td>14</td><td>현대모비스(주) 울산전동화공장</td><td>박정국</td><td>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블럭</td></tr><tr><td>15</td><td>현대건설기계(주)</td><td>공기영</td><td>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울산공장)</td></tr><tr><td>16</td><td>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td><td>장재훈</td><td>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td></tr><tr><td>17</td><td>현대글로비스(주) 울산KD센터</td><td>김정훈</td><td>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td></tr></table>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4	현대모비스(주) 울산전동화공장	박정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블럭	15	현대건설기계(주)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울산공장)	16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장재훈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17	현대글로비스(주) 울산KD센터	김정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14	현대모비스(주) 울산전동화공장	박정국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이화산업단지 2-1블럭																		
15	현대건설기계(주)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울산공장)																		
16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장재훈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0																		
17	현대글로비스(주) 울산KD센터	김정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산업로 100																		
변경 사항	<table><tr><td>구분</td><td>No</td><td>특구사업자명</td><td>대표자명</td><td>주소</td><td>변경사유</td></tr><tr><td>사업자 추가</td><td>15</td><td>현대제뉴인(주)</td><td>손동연 조영철</td><td>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77</td><td rowspan="2">산업차량부문 지위승계</td></tr><tr><td>사업자 해지</td><td>15</td><td>현대건설기계(주)</td><td>공기영</td><td>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 (울산공장)</td></tr></table>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추가	15	현대제뉴인(주)	손동연 조영철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77	산업차량부문 지위승계	사업자 해지	15	현대건설기계(주)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 (울산공장)			
구분	No	특구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변경사유																
사업자 추가	15	현대제뉴인(주)	손동연 조영철	울산광역시 동구 고늘로 77	산업차량부문 지위승계																
사업자 해지	15	현대건설기계(주)	공기영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1-64 번지 외 (울산공장)																	
비고	관보 19643호(2019.12.6.) 66~67쪽, 관보 19803호(2020.7.28.) 221쪽, 관보 19886호(2020.11.27.) 145~146쪽, 관보 19954호(2021.3.9.) 79~80쪽, 관보 20040호(2021.7.9.) 116~117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1쪽.																				

○ 규제특례특례등에 관한 사항

<실증특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기존 내용 수소 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영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상,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부대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영 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 10kW 초과 연료전지 파워팩은 KS 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급)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고용 노동부 산업 통상 자원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소재 및 방폭 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②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무인운반차 운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무인운반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부대조건> - 상기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부대조건을 적용(단, 국산 MEA,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미적용) - 무인운반차 디자인 및 운행 특성을 고려한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 반영 ③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특례 - 실내물류운반기계 수소충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에 연료용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예외 적용 <부대조건> - 용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 기준을 준용 - 이동식충전소 충전대상 실내물류운반기계 추가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특구사업자) (주)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주), (주)코렌스알티엑스, (주)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주)스마트오션, (주)하나티피에스, (주)유니팩, (주)원일티엔아이, 현대건설기계(주), 현대모비스(주) 울산전동화공장,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현대글로벌비스(주) 울산KD센터, 에스아이에스(주), 한영테크노캠(주),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재)울산테크노파크	

○ **변경사항** : ①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부대조건(연료전지)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수소 연료전지 실내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① 지게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국산화) 적용 운행실증 특례 -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운행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가 적용된 지게차에 대한 안전인증 허가 - 국산 MEA 적용을 통한 연료전지 소재 국산화율 향상, 고체수소저장 시스템 신기술 적용 및 검증을 통한 충전 편의성 개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변경
사항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비고
	<부대조건> - 위험 요소 평가를 수행하여 실증 착수 이전에 사고 예방조치(부품/제품/환경/운행 관점) - (연료전지) 연료전지 파워팩은 KSC 8569 등 KS 인증제품 사용 * 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 국산화율 : 88%(현재 30~40%) **10kW 초과 연료전지파워팩은 KS인증대신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 기준(한국가스안전공사 KGS AH 372, KC인증)으로 대체 - (수소용기) TYPE4 고압수소용기(카본 복합소재) KGS 인증제품 사용 - (고체수소저장시스템) 용기부분은 AC 211코드에 따라 제품 제작 및 필증 획득하고, 부품은 ASTM 및 KS 등 코드 등록소재 및 방폭 부품 사용 - (지게차) 건설기계용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기준(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4)을 준용하여 제작 ② ~ ③ 생략(기존내용과 동일) (특구사업자) (주)가온셀 울산지사, 비나텍(주), (주)코렌스알티엑스, (주)코멤텍 울산지점, 일진하이솔루스 울산사업장, (주)스마트오션, (주)하나티피에스, (주)유니팩, (주)원일티앤아이, 현대제뉴인(주), 현대모비스(주) 울산전동화공장,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현대글로벌비스(주) 울산KD센터, 에스아이에스(주), 한영테크노캠(주), 주식회사 에스첨단소재, (재)울산테크노파크	
비고	관보 19643호(2019.12.6.) 67쪽, 관보 19649호(2019.12.16.) 72쪽, 관보 19954호(2021.3.9.) 81~84쪽, 관보 20040호(2021.7.9.) 117~120쪽 관보(별권) 20136호(2021.11.30.) 283~284쪽	

충청북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변경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규제샌드박스>

기 준 내 용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2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기존내용과 동일 >					
변경사항	○ 변경사항 :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 특례추가 부여						
	<table> <tr> <th>No</th><th>세부사업</th><th>특례부여 현황</th></tr> <tr> <td>1</td><td>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td><td> ○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 수소제조업자에게 직공급을 위한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이 면제되도록 실증 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부대조건>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 * 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 안전 확보 필요 (※ 부대조건 관련, 지자체 및 특구사업자와 협의 완료) </td></tr> </table>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 수소제조업자에게 직공급을 위한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이 면제되도록 실증 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부대조건>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 * 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 안전 확보 필요 (※ 부대조건 관련, 지자체 및 특구사업자와 협의 완료)
No	세부사업	특례부여 현황					
1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	○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수소제조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부대조건> ○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의 기존 배관 인프라 투자비용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배관투자 손실보상 방안이 필요하며, 직공급 실증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필요 ○ 수소제조업자에게 직공급을 위한 바이오가스제조업자가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품질검사 기준이 면제되도록 실증 특례 부여 * 규제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부대조건> ○ 가스품질향상설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현행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의 사업소 밖의 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확보 필요 * 부취제가 혼입되지 않은 바이오가스는 누출검지의 어려움이 있어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 매설배관의 이중보호관 설치, 차단밸브 설치, 표지판 설치를 통한 강화된 안전 확보 필요 (※ 부대조건 관련, 지자체 및 특구사업자와 협의 완료)					
비고	관보 제20054호(2021.7.29.) 116쪽						